

보증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								
제1장 보증자리론 개요 3 용어의 정의 (2)채무자 <table><tr><th>용어</th><th>정의</th></tr><tr><td>전세사기 피해자등</td><td>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전세사기 <u>특별법</u>’)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</td></tr></table> 제4장 대출요건 5 우대금리 <table><tr><th>적용대상</th><th>적용요건</th><th>우대금리</th></tr><tr><td>전세사기 피해자등</td><td><u>신청일</u>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경우</td><td>1.0%p</td></tr></table> 제14장 전세사기피해자 보증자리론 1 적용범위 1)~2) <생략> 3) 본 장은 「<u>전세사기특별법</u>」 제14조의2에서 정한 기간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적용	용어	정의	전세사기 피해자등	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전세사기 <u>특별법</u> ’)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	적용대상	적용요건	우대금리	전세사기 피해자등	<u>신청일</u>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경우	1.0%p	제1장 보증자리론 개요 3 용어의 정의 (2)채무자 <table><tr><th>용어</th><th>정의</th></tr><tr><td>전세사기 피해자등</td><td>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전세사기 <u>피해자법</u>’)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</td></tr></table> 제4장 대출요건 5 우대금리 <table><tr><th>적용대상</th><th>적용요건</th><th>우대금리</th></tr><tr><td>전세사기 피해자등</td><td><u>승인일</u>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경우</td><td>1.0%p</td></tr></table> 제14장 전세사기피해자 보증자리론 1 적용범위 1)~2) <현행과 같음> 3) 본 장은 <u>전세사기피해자법</u> 제14조의2에서 정한 기간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적용	용어	정의	전세사기 피해자등	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전세사기 <u>피해자법</u> ’)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	적용대상	적용요건	우대금리	전세사기 피해자등	<u>승인일</u>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경우	1.0%p	법명의 정식 약칭 사용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사항 반영 낫표 삭제
용어	정의																					
전세사기 피해자등	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전세사기 <u>특별법</u> ’)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																					
적용대상	적용요건	우대금리																				
전세사기 피해자등	<u>신청일</u>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경우	1.0%p																				
용어	정의																					
전세사기 피해자등	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전세사기 <u>피해자법</u> ’)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																					
적용대상	적용요건	우대금리																				
전세사기 피해자등	<u>승인일</u>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경우	1.0%p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	비고
2 채무자 요건 1) <u>신청일</u> 기준 “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*” 으로 확인되는 전세사기피해자등 일 <u>것</u> * 「<u>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</u>」 [별지 제5호서식] 2)~4) <생략> <신설>	2 채무자 요건 1) <u>승인일</u> 기준 “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*” 으로 확인되는 전세사기피해자등 일 <u>것(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또는 철회가 확인되는 자는 제외)</u> * <u>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</u> [별지 제5호서식] 2)~4) <현행과 같음>	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사항 반영 낮표 삭제
	10 기타 유의사항 ☐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또는 철회가 확인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액 전부를 즉시 상환받거나 대출금리에 3%p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적용함 ※ 가산금리 추가 적용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또는 철회가 확인되는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완료. 기타 가산금리 추가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유동화자산관리 업무처리기준」을 따름 ○ 채무자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면 이미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인수인에게 대출금액 전부를 즉시 상환받거나 대출금리에 3%p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적용함	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사항 반영